

의안번호	제 107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4월 24일 (제 259 회)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07년 4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연월일 : 2007년 4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수를 대폭 증원하고 위원자격을 명확히 하며, 턴키·대안입찰에 따른 별도의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그 밖에 참석위원의 수당 및 설계심의수수료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관련규정의 정비 (안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 (1) 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120인 이내를 250인 이내로 확대
  - (2) 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함
  - (3) 설계심의의 사안에 따라 별도의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 위원회의 기능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2006.12.29개정)에 따라 정비 (안 제10조)
- 다. 사전기술검토에 따른 수당을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안 제15조)
- 라. 건설공사 설계심의에 따른 수수료 징수 관련 산출근거 및 면제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15조의2)

### 3. 의안전문 : 별 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임

### 5. 관계법령 말체 : 별 임

##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균형발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과·팀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정수의 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본청의 5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건설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종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④ 도지사는 제10조제3호에 의한 설계적격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설계에 계산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에 의한 설계적격심의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의 조명 “출석수당 등”을 “수당 및 여비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제3호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수당 및 여비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심의신청시”를 “위원회의 심의전까지”로 하며,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의 기술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수수료 산출기준(1건당)	
1. 조례 제10조 제1호 · 제2호의 심의사항	위원 수×(사전심의비+회의출석수당+교통비)	
2. 조례 제10조 제4호에 의한 입찰방법 심의사항	위원 수×(회의출석수당+교통비)	
3. 조례 제10조 제3호의 심의사항	가. 입찰안내서 심의 나. 일괄입찰 ·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 적격심의	위원 수×(사전심의비+회의출석수당+교통비) [기술위원 수×{여비+(사전심의비)×옹찰업체 수} + [기술위원 수+평가위원 수] ×(여비+회의출석수당)]
4. 그 밖의 심의사항	위원 수×(사전심의비+회의출석수당+교통비)	

**※ 비 고**

1. 사전심의비 및 회의출석수당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2. 교통비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별표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에서 정한 원거리 출석수당
3.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란을 적용한다. 단, 운임은 자동차운임으로 하고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기준」에서 정한 원거리 출석수당 중 100km초과-200km이내를 적용
4. 옹찰업체 수는 일괄입찰 · 대안입찰 공사의 입찰에 옹한 업체의 수를 말하며, 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원안은 1개의 업체 수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과·팀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뛰어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과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 할 수 없다.</p>	<p><b>제2조(위원회 구성)</b> ①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p> <p>② 위원장은 고령발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과·팀장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정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li> <li>2. 건설관제 단체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li> <li>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li> <li>4.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그 분야에 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li> <li>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li> <li>6. 건설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li> </ol>

현 행	개 정 안
<p>④ (신설)</p>	<p>④ 도지사는 제10조제3호에 의한 설계적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실 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p>
<p><b>제3조(위원장의 업무) ① (생략)</b></p> <p>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3조 (위원장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b></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10조(위원회의 기능)</b>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산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2001. 6. 15)</li> <li>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및 신기술 적용여부</li> <li>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li> </ol>	<p><b>제10조 (위원회의 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설계에 계산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리를 밟은 건설공사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li> <li>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체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li> <li>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li> </ol>

현 행	개 정 안
	<p>다. 가로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p> <p>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p> <p>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p> <p>5.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p> <p>6.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p>
<p><b>제14조(소위원회 등) ①~②(생략)</b></p> <p>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p> <p>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u>소위원회위원장이</u>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p> <p>⑤~⑦(생략)</p> <p>⑧소위원회 회의는 <u>제6조제2항의</u>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14조(소위원회 등) ①~②(현행과 같음)</b></p> <p>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 한다.</p> <p>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p> <p>⑤~⑦(현행과 같음)</p> <p>⑧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에 의한 설계적격심의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b>제15조(출석수당 등)</b>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비 및 여비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설비 면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li> <li>사전심의 수당 : 설계심의 1안건당 20,000원 이하</li> </ol> <p>② (신설)</p>	<p><b>제15조(수당 및 여비등)</b> ①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비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0조제3호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수당 및 여비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b>제15조의2(수수료)</b> ① 건설공사 설계 등을 실의요청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제19호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의신청 시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③ (신설)</p>	<p><b>제15조의2(수수료)</b> ①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실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의 기술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위원회의 실의전까지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③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b>제16조(시행규칙)</b>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p>	<p><b>제16조(시행 규칙)</b>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관 계 법령 발췌

### □ 건설기술관리법

-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 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 설공사
    -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 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

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5.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실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2항제1호의2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

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5조 (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 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제98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자격입찰의 대안입찰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2조 (대안의 채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안의 공종별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대안으로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안 입찰자가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으로 대체하여 대안입찰금액을 조정한 후 제42조제2항의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대안입찰금액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격입찰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대안 중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수정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